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5월 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5월 18일

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급수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, 표준 급수조례를 각 지자체의 급수조례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음으로서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코자 함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급수공사 신청 시 제수수료를 감면하여 신규 신청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 상수도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

## 다. 주요내용

-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및 신설
- 체납요금의 불합리한 승계를 제도 개선하여 수도사용자들에게 부가하는 책임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(안 제25조)
-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기한을 정부 표준 급수조례안과 같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(안 제27조제3항)
- 중수도 관련 조항이 「수도법」에서 「하수도법」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 삭제
- 급수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수수료 감면(안 제40조)
-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시 설치비용 감면(안 제46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「수도법」 제3조 제24호 · 제13조 · 제38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· 제139조제1항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
- 「하수도법」 제26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#### 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#### ○ 주요 내용은

-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및 신설(안 제2조~제42조)
- 체납요금의 불합리한 승계를 제도 개선(안 제25조)
  - 경매,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 체납요금 면제
-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기한 조정(안 제27조)
  - 종전 소재 불명 시 “6개월 이상” ⇒ “3개월 이상”
  - 종전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“4개월 이상” ⇒ “3개월 이상”
- 중수도 관련 조항 「수도법」에서 「하수도법」으로 이관 관련 조문 삭제(안 제8조~제9조)
- 급수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수수료 감면(안 제40조 관련 별표5)
-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시 설치비용 감면(안 제46조)

#### ○ 검토 결과

- 「수도법」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중수도 관련 조항이 「수도법」에서 「하수도법」으로 이관되어 관련조문 삭제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

- 체납요금의 불합리한 승계 제도 개선 및 급수 신청 시 제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신규 신청자의 비용 부담 경감과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시 설치비용 감면 규정 마련으로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 및 상수도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   론      요   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   사      결      과 : 원안가결